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 허은아·강민국·박대수

전주혜 · 김정재 · 박성민

金炳旭・송언석・김예지

윤주경 · 지성호 의원

(11일)

제안이유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파행으로 치닫던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이 강해지고 있음.

'함께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첫째, 임시회를 매월 개회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해당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법안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연중 법안처리를 도모해야 함.

둘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소위를 매월 4회 개최하도록 하여 현안에 대한 정치적 다툼으로 상임위 입법활동이 중단되는 현상을 막아야 함.

셋째,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원심사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설치하여 국민청원 심사를 내실 있게 수행해야 함.

주요내용

- 가. 정기회가 아닌 월(月)의 1일과 12월 1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하는 등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작성기준을 변경함(안 제5조의2).
- 나.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둠(안 제46조 의4 신설).
- 다.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4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57조제6항).
- 라. 의장이 작성하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법률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를 추가함(안제76조의2제3호 신설).
- 마. 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청원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고, 월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함(안 제125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을 "정기회가 아닌 월(月)의 1일과 12월 11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총선거가 있는 경우"를 "총선거일이 있는 월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임시회"를 "임시회"로,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 임시회"를 "2월·4월·6월 및 8월 임시회"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제36조 중 "의안과 청원 등의"를 "의안 등의"로 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4(청원특별위원회) ①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청원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청원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 한다.
- ⑤ 청원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6항 중 "매월 2회"를 "매월 4회"로 한다.

제7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 요일 오후 2시

제124조제1항 중 "소관 위원회에"를 "청원특별위원회에"로 한다.

제1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 ②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 ③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할 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 ④ 청원특별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 ⑤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

다.

- ⑥ 청원특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⑦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있다.
- ⑨ 청원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① 청원특별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 때에 해당 청원을 처리하기 위한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청원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
- ① 청원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

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①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7조의3제1항 전단 중 "위원회는"을 "청원특별위원회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 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원 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정 등) ① (생 략)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	②
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u>.</u>
1. <u>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u>	1. <u>정기회가 아닌 월(月)의 1일</u>
<u>6일</u> 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	과 12월 11일
만, 국회의원 <u>총선거가 있는</u>	<u>총선거일이 있</u>
<u>경우</u>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	는 월에는
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	
다.	<u>.</u>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2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임시회
는 30일(8월 16일에 집회하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	
<u>일까지)로</u> 한다. <단서 신	다만, 임시회
설>	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3.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3. <u>2월·4월·6월 및 8월 임시회</u> -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	
다.	<u></u>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 지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 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신 설>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 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 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षो 36≥	전(상임	위원회의	기 직무)	
				<u>의</u>
<u>안</u>	등의			

---.

- 제46조의4(청원특별위원회) ① 청 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특 별위원회를 둔다.
 - ② 청원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③ 청원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의임기와 위원장의임기및 선거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 및제2항,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5 청원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같다)는 3월·5월(폐회 중에 한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 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 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 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략)
 -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u>매월 2회</u> 이상 개회한다.
 - ⑦ ~ ⑨ (생 략)
-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의장은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제76조제2항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한다.
 - 1. 2. (생 략)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학	현 행
과 같음)	
⑥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회기 전체 의사일기	정의
작성기준)	

<신 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거나 전산망에입력하는 방법으로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② (생략)

-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위하여
 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청원인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
 - ②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사를 위한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③ 청원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심사할 및
 - 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 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

<u>3.</u>	벋	급률	-안	수	길의	를	위	한	본	-회	의
	<u>개</u>	의	일/	시:	메	월	두	- 1	번찌	∄,	네
	<u>번</u>	째	목	요.	일	오	후	2시]		
12	42	돈(>	청유	원요	고	서.	의	작	성회	<u></u>	회
부)	1	-								
	<u>청</u>	원-	특투	별우	원	회	게				
					•						
2	(현	행고	가 :	같음	음)					
	12 부 	기 번 124년 부) <u>청</u>	개의 번째 124조(* 부) ① <u>청원</u>	개의일/ 번째 목 124조(청숙 부) ① -	개의일시: 번째 목요 124조(청원요 부) ① 	개의일시: 매 번째 목요일 124조(청원요지 부) ① 	개의일시: 매월 번째 목요일 오 124조(청원요지서· 부) ①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오후 124조(청원요지서의 부) ①	개의일시: 매월 두 년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124조(청원요지서의 작부) ①	개의일시: 매월 두 번째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되 부) ①	

-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①
 청원특별위원회의 청원 심사는
 청원인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
 론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다.
- ②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 심 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를 둔다.
- ③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을 심사할 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 록 한다.
- ④ 청원특별위원회는 월 1회

- 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 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 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다.
- ⑧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

- 이상 개회한다.
 - ⑤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폐회 중이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 게 할 수 있다.
- ⑥ 청원특별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① 청원특별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못하였을 때에는 청원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요구할 수 있다.
-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같

은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 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 의한다.

⑨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 로 정한다.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 은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 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특별위 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 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⑨ 청원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① 청원특별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본회의에 청원을 부의할 때에 해당 청원을 처리하기 위 한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은 청원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 부하여 이를 심사 · 보고하도록 한다.

① 청원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 한 청원은 그 처리 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 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폐 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 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 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이 고충 민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 충민원을 말한다)으로서 정부 에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청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 결 과를 해당 조사를 요구한 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u> </u>	
	⑩ 청원 심사에 관하여 그	. 밖
	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	칙 <u>으</u>
	로 정한다.	
제	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
	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1
	<u> 청원특별위원회는</u>	
	② (현행과 같음)	

이에 브이하다